

【별표 1】 가점부여기준

구 분		가점기준
1.특정직위 근무경력	가. 기피·격무직위	기피·격무직위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매월 0.03점
	나. 전문직위	전문관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2년 경과시 매 월 0.03점
	다. 자체감사담당	자체 감사담당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매월 0.03점
2.적극행정 우수성과 자	자랑스런 인사혁신처인상 수상자	'혁신인'으로 선발된 자 3점
		'창조인'으로 선발된 자 2점
		'도전인'으로 선발된 자 1점

비고1 : 제1호 '특정직위 근무경력'의 경우 가점부여 대상 재직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1개 가점만 인정한다.

비고2 : 제2호 '적극행정 우수성과자'의 경우, 처장표창 업무지침 상의 '자랑스런 인사혁신처인상에 대한 등급 특례'로 평정가점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.

비고3 : 제1호 가목의 기피·격무직위는 4급 및 5급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업무,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업무,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송무업무 담당자 중 부서장이 정하는 1인으로 하고,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업무,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업무, 복무과 복무제도업무 담당자 중 부서장이 정하는 1인으로 한다.